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- 관광진흥법 제67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(관광진흥법 제67조 제1항)
-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·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(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)
- 당항포관광지의 기존 입장료와 엑스포주제관 관람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통합하여 징수하려는 것이며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경우 이용료 징수에 있어 어른, 청소년, 어린이를 차등화 하려는 것으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차등화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정이라 할 것이나,
- 입장료와 엑스포주제관 관람료의 통합징수를 함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엑스포 주제관은 관광지내 주요한 볼거리로 입장객 모두에게 관람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입장료와 주제관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면 요금이 비싸다고 느껴 관광객이 감소하지는 않겠는지?
- 답 : 통합하여 시험운영 해 본 결과 입장객수와 수입이 증가하였음.
- 문 : 당항포관광지는 2회에 걸쳐 엑스포가 개최된 장소로 관광지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된 상태이며,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- 답 : 전년대비 입장객은 12,000명이, 수입은 9,69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9. 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